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43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3. 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· 관리와 절약 등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
- 2. 에너지 활용 · 관리와 절약 등에 관한 재정투자계획 심의
- 3. 에너지 활용 · 관리와 절약 실태 평가
- 4. 에너지 관련 홍보와 교육 계획 심의
- 5.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다.
- ③ 당연직위원은 교무과장, 학생지원과장, 기획과장, 총무과장, 시설과장이되며, 위촉위원은 학내외 관련 전문가, 각 행정실장 중 적임자를 위촉한다.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- ② 간사는 시설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제7조(포상)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- 제8조(수당 등) 위촉위원 및 자문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(제43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